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

발의년월일 : 1993. 3.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91. 7. 15. 기구 개편에 따라 농림국이 2개국으로 분리되고, 건설국 명칭도 변경되어 개정을 통한 현실화를 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직제개편에 따라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추가 및 개편.

○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의 범위를 관광 및 환경부문을 포함시킴.

○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기하도록 개정.

□ 근거법령 :충청북도직제규칙 제1779호

□ 첨 부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림국장및건설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를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부단장은 건설국장"을 "부단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학식경험이 있는자라 함은 공업, 수산업, 광업, 건설및경제, 사회, 지리등의"를 "학식경험이 있는 자라함은 공업, 수산업, 광업, 건설, 관광, 경제, 사회, 지리, 환경등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간사는 도시국장"을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과"를 "서기는 도시계획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조직) ③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림국장 및 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	제2조(조직) ③ ……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
제7조의2(지방조사연구단) ②지방조사연구단의 구성은 단장1인 및 부단장 1인과 위원5인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건설국장이 되며……	제7조의2(지방조사연구단) ② …… 건설도시국장 ……
제8조(전문위원) ②제1항의 학식경험이 있는자라 함은 공업, 수산업, 광업, 건설 및 경제 사회, 지리등의 각 부문의……	제8조(전문위원) ② …… 건설, 관광, 경제, 사회, 지리, 환경등 ……
제10조(간사및서기) ②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과 지역계획계장이 된다.	제10조(간사및 서기) ②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과 ……